

한국석유공사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
(2016.10.06.)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 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정보공개위원회	5	2	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2	기록물평가심의회	5	2	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2

II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·위탁규정(조항)
1	푸르니보육지원재단	30	영유아보육법 제14조

III. 법 제11조제1항제3호

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	파견인원(명)	파견근거규정(조항)
1	94	파견법 제20조 등

IV. 법 제11조제1항제4호

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
연번	법인·단체 명	공무수행사인(명)	심의·평가규정(조항)
1	개인	3	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
2	개인	8	건설기술진흥법 제6조